별첨 2

선불전자지급수단 규율체계 개선방안

2026. 11.

금 융 위 원 회
금 융 감 독 원

목 차

Ⅰ. 선불전자지급수단 제도 연혁 ····· 1

Ⅱ.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율체계 개편 필요성 ····· 2

Ⅲ. 개선방안 ····· 3

1. 선불전자지급수단 한도 체계 개선 ····· 4

2. 외국인 금융이용 편의 제고 ····· 5

3. 이용자 보호 및 부정사용 방지 강화 ····· 6

Ⅴ. 향후 계획 ····· 7

Ⅰ. 선불전자지급수단 제도 연혁

□ ’07.1월, **전자금융거래법 제정** 당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권면을 **최대 50만원***으로 규율

* 도난·분실 피해, 자금세탁·불법행위 사용 우려, 선불카드(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사가 발급가능) 발행권면한도 50만원 등을 감안하여 설정

□ ’08.7월, **무기명 선불과 구분**하여 **기명식 선불**(「금융실명법」 상 실지명의 확인 또는 예금계좌 연결)은 **한도**를 **200만원**까지 상향

□ ’15년 이후 **온라인 결제 편의 제고**를 위한 환경 마련과 함께 **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건전한 이용·이용자 보호**를 위한 규제 정비

○ ’15.3월 전자금융거래시 **공인인증서 이용의무 폐지***, ’19.12월 **오픈뱅킹 전면 도입**으로 **선불전자지급수단** 이용이 **대폭 확대**

* 전자금융거래 성격·위험수준에 따라 다양한 인증방식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간편 비밀번호, 패턴, 생체인증(지문/얼굴/홍채 인식) 등 다양한 인증수단 등장

○ 한편, ’19.7월 **전금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**를 도입하고, ‘23.9월 **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**를 규율하는 등 제도 보완

□ ’21.11월, 외국인 관광객의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 한도를 50만원에서 **100만원으로 상향**하는 서비스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

< 선불충전금 연간 이용건수(단위: 억건) **>**



< 선불충전금 연간 이용금액(단위: 조원) **>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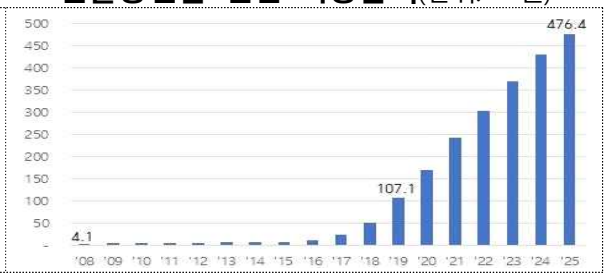

Ⅱ.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율체계 개선 필요성

1 온라인 중심 상거래 환경 변화를 뒷받침하는 결제 제도 구축 필요

○ 현재 선불전자지급수단 한도는 '08년 이후의 **물가상승*** 및 **소비 행태 변화**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

* 소비자물가지수('20년 기준 = 100) : '08.7월 82.7 → '26.10월 120.7 (+45.9%)

○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, 스마트폰 일상화 등으로 **디지털 지급결제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**됨에 따라 **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급증***

* 선불 일평균 이용액수: ('20년) 4,676억원 → ('25년) 1조3,051억원(+179%)

2 빠르게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편의 증진 도모

○ 최근 **외국인 관광객 소비 규모가 빠르게 증가** 중*이며, 외국인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유용한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중

* '26.1~9월 외국인 관광 분야 카드 소비액: 15조9,416억원(전년 동기 比 +47.7%)

○ **방한 외국인 관광객**의 수요*에 맞추어 **결제 편의 제고 필요**

* ① 문화체육관광부, '입국 3천만명 시대'를 앞당기기 위한 '방한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' 전략 발표('26.2.24일)
② '26.11.12일(목), 사상 최초로 연간 외국인 관광객 수 2,000만명 돌파

3 선불전자지급수단 부정사용 가능성 최소화 필요

○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간단한 절차(예: 휴대전화 본인확인)만 거쳐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**범죄에 악용될 가능성***도 존재

* (예) 무기명 선불을 이용하여 도박자금 충전·자금세탁

○ 최근 기술 변화를 반영하여, 이용한도 제한과 같이 **선불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도입 필요**

Ⅲ. 개선방안

[기본 방향]

선불전자지급수단이 일상적인 결제수단으로 이용되는 현실에 부합하도록 규율체계 개편

[추진 과제]

1 선불전자지급수단 한도 체계 개선	❶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잔액 한도 차등 적용 ❷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1일 이용한도 규제 마련
2 외국인 금융이용 편의 제고	❶ 외국인 관광객 선불전자지급수단 본인확인 방법 개선 ❷ 외국인 관광객 대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잔액 한도 상향 및 1일 이용 한도 마련 ❸ 외국인 대상 오프라인 오픈뱅킹 실시
3 이용자 보호 및 부정사용 방지 강화	❶ 선불전자지급수단 최소 충전단위 개선 권고 ❷ 부정결제 방지 체계 강화 ❸ 접근매체 양도 등에 따른 벌칙 추가

선불충전금 한도 규제 개편방안 요약(단위: 만원)

< 현행 >

구분	기명식	외국인 관광객 특례	무기명식
권면한도	200	100	50

< 개선 >

구분	기명식		외국인 관광객 특례	무기명식
	실지명의 확인	예금계좌 연결		
충전잔액 한도	500	300	300	50
1일 충전규모	1,000	600	600	-

1. 선불전자지급수단 한도 체계 개선

(1)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잔액 한도 차등 적용

□ **(현행)**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**발행권면 한도**는 '08.7월 **200만원**으로 규정된 이후 변동 없음

○ 이에, 항공권, 여행·숙박, 미용·의료 등의 결제에 **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**하는데 **애로사항 존재**

□ **(개선)**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**본인확인 방식** 및 선불업자의 **보안체계** 등 보완 조치를 바탕으로 **충전잔액 한도를 차등적으로 상향**

① **(예금계좌 연결 시) 예금계좌를 연결**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 충전잔액 한도를 **300만원**으로 상향

② **(실명확인 시) 실명확인을 이행**하고, **선불업자의 보안 수준이 충분**하다고 인정되는 경우* 충전잔액 한도를 **500만원**까지 **상향**

* ❶ (**실명확인 이행 방법**)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명확인을 실시
❷ (**보안 수준 충족**) 금융보안원의 보안성 심사 등 안전성 검토 진행

- 또한, 선불업자가 **주민등록번호를 통해** 특금법상 **고객확인의무를 이행**할 수 있도록* **제도 개선 병행**

* 현재는 선불업자가 연계정보(CI), 계좌정보 파악을 통해 고객확인의무 이행중

(2)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1일 이용한도 규제 마련

□ **(현행)** 발행권면 한도 외에 **이용한도와 관련된 규제는 부재**

□ **(개선)** **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1일 이용한도** 마련

○ **예금계좌를 연결**하는 경우 **600만원**, **실명확인**을 이행한 경우 **1,000만원**으로 1일 이용한도 설정

※ 법령상 한도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1회/1일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업계 지도

2. 외국인의 금융이용 편의 제고

(1) 외국인 관광객 선불전자지급수단 본인확인 방법 개선

□ **(현행)** 외국인 관광객용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는 본인확인 시 100만원으로 상향될 수 있으나, **까다로운 절차로 한도 상향에 제약**

□ **(개선) 외국인 관광객**에 대한 **새로운 본인확인 방식 도입**

※ 금융보안원의 보안성 심사 등 안전성 검토를 거친 선불업자에 한해 적용

○ ① **전자여권 확인**, ② **여권정보·출입국정보 연계**와 ③ **실시간 안면 인증**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본인확인 방식 신설

- 선불업자가 법무부 보유 여권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**정보의 범위, 요청 자격** 등에 관한 **전금법 상 근거 마련**

○ 선불업자가 **외국인 여권 번호**를 통해 「특정금융정보법」 상 **고객확인의무도 이행**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

(2) 외국인 관광객 대상 선불 충전 잔액 한도 상향 및 1일 이용 한도 마련

□ **(현행)** 외국인 관광객의 **소비 규모*에 비해** 선불전자지급수단 **한도가 다소 낮음**(무기명 50만원, 외국인 관광객 특례 100만원)

* '25년중 방한 외국인 1인 지출경비는 $1,327(한국문화관광연구원)

□ **(개선) 외국인 관광객 대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잔액 한도를 상향**하고, **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보완방안**도 함께 마련

○ 새롭게 도입되는 **본인확인 방식*을 충족한 외국인**에 대해 **충전잔액 한도 300만원, 1일 이용한도 600만원** 적용

* ① 전자여권 확인, ② 여권정보·출입국정보 연계와 ③ 실시간 안면 인증

○ 이 경우 준수해야 하는 **자금세탁 방지 보완방안***도 함께 마련

* ① 국내 가맹점에서만 사용(해외 사용 금지), ② 현금 인출 시 고객확인 재이행,

③ 이용자 간 이전·양도 금지, ④ 발행 90일 후 및 출국 후 사용 제한

(3) 외국인 대상 오프라인 오픈뱅킹 실시

□ **(현행)** 국내 거주 외국인은 **은행 점포수 축소** 및 **비대면 금융거래의 어려움** 등으로 인해 금융거래에 불편함 발생

○ 시간 부족 등으로 **여러 은행 창구**를 방문하기 어려운 **이주노동자** 등도 **오프라인 오픈뱅킹***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

* '25.11월부터 내국인 대상 오프라인 오픈뱅킹 旣 개시

□ **(개선)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**(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 신고증 보유)도 **오프라인 오픈뱅킹 이용**이 가능하도록 **운영 방식 개선**

○ 외국인 특화점포* 등 **외국인 고객 이용수요가 높은 영업점을 중심으로 우선 실시**

* 외국인 근로자 등 이용편의를 위해 외국어 능통직원 상주 등 서비스 제공 중

3. 이용자 보호 및 부정사용 방지 강화

(1) 선불전자지급수단 최소 충전단위 개선 권고

□ **(현행)** 일부 선불업자들이 **최소 충전단위**(예: 1만원)를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**필요 이상으로 충전**해야하는 불편 존재

□ **(개선) 최소 충전단위 합리화**로 장기 미사용 선불 발생 방지

○ **불필요한 초과충전**이 발생하지 않도록 **모범사례 전파** 및 **충전 기준 운영원칙*** 마련 권고

* (예) 과도한 최소 충전금액 설정 금지, 일정규모 이상 결제시 1원 단위 충전 등

(2) 부정결제 방지 체계 강화

□ **(현행)** 신용카드는 사행행위 등에 사용이 금지되나(여전법 제2조), **선불전자지급수단은 결제 금지업종이 부재**

○ 한편, 부정결제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**이상거래 신고 대응** 및 **보이스피싱 탐지** 관련 업계 역량도 강화할 필요

□ **(개선)** 선불전자지급수단의 **건전한 이용 및 이용자 피해발생 방지**를 위해 **제도 정비 및 업계 노력 강화**

① **(결제 업종 제한)** 선불업권에서 자율적으로 **사행행위 등**에 있어 **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결제를 제한**하도록 업계 지도

* 사행성 산업 등 신용카드 결제금지 업종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정 권고

② **(피해신고 대응창구)** 계정도용 등 피해 발생 시 이용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**피해신고 전용 채널을 24시간 운영**하도록 업계 지도

③ **(ASAP* 정보공유)**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 공유를 통해 **선불업자의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 강화**(8.4일 ASAP 본격 출범)

*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(AI-based anti-phishing Sharing & Analysis Platform)

(3) 접근매체 양도 등에 따른 벌칙 추가

□ **(현행)** 선불전자지급수단은 **접근매체 발급시 본인확인 의무가 없으며, 접근매체 양도·대여 등 금지*** 대상에서도 제외

* 원칙적으로 접근매체 양도·양수, 범죄 이용 목적 또는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

□ **(개선)** 선불전자지급수단 **접근매체 발급 시 본인확인 의무 부여** 및 접근매체 **양도·양수 등을 규제**(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 제외)

Ⅳ. 향후계획

□ **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**은 **'27년 상반기 내 도입**하고, **법령 개정 사항**은 **'27년 상반기 중 개정안 마련 후 개정 추진**

□ 한편, **선불전자지급수단 한도 상향**은 법령 개정 전이라도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**혁신금융서비스 지정*** 추진

* 지정 시 안정적인 선불 운영이 가능하도록, 1일 충전 규모 설정 등 **법령 개정 이후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부가조건 설정**